



서울중앙지방법원

결 정

사 건 2018카합35715 소송비용액확정

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
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(삼성동, 강남구청)
 구청장 정순규
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

피 신 청 인 1. 김남진
 인천 중구 백운로228번길 52, 1동 301호(운북동, 해든누리)
 2. 박호영
 화성시 향남읍 마곡동길 150 (하길리)

주 문

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7971, 2013가합19101(병합) / (환송전)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21, 2013나2017238(병합) / (환송전)대법원 2016다214483, 2016다214490(병합)/(환송후)서울고등법원2016나2051024,2016나2051031(병합)/(환송후)대법원 2017다242287, 2017다242294(병합) 손해배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1. 김남진(원고(선정당사자))이 신청인에게 금 6,231,391원, 피신청인2. 박호영(원고(선정당사자))이 신청인에게 금 231,391원 임을 확정한다.

이 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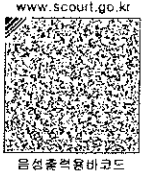
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9. 6. 18.

사 법 보 좌 관

조성대





소 송 비 용 계 산 서

2018카합35715

신청인 :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[2011가합117971, 2013가합19101(병합) / (환송전)서울고등
법원 2013나2016921, 2013나2017238(병합) / (환송전)대법원 2016다214483, 2016
다214490(병합) / (환송후)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024, 2016나2051031(병합)/
(환송후)대법원 2017다242287, 2017다242294(병합)]

소가¹⁾ 제1심 : 5,680,000,000원, 제2심 : 5,538,000,000원, 제3심(환송전) : 29,304,000원
제3심(환송후) : 160,000,000원

1. 총 소송비용

(단위 : 원)

심급	비목	비용액	비고
1심	변호사보수	12,100,00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9,800,000 + (5,680,000,000 - 500,000,000) × 0.005 = 35,700,000원이나,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함
소계		12,100,000	
2심 및 환송심	변호사보수 ²⁾	11,550,00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9,800,000 + (5,538,000,000 - 500,000,000) × 0.005 = 34,990,000원이나,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(환송전 + 환송후)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함
소계		11,550,000	
3심 (환송전)	변호사보수	2,058,24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,500,000 + (29,304,000 - 20,000,000) × 0.06
	인지대 ³⁾	246,200	((29,304,000 × 0.0045 + 5,000) × 2) × 0.9(전자)
	송달료	118,400	실제 지출비용 산입
소계		2,422,840	
3심 ⁴⁾ (환송후)	변호사보수	6,000,00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4,800,000 + (160,000,000 - 100,000,000) × 0.02
소계		6,000,000	
본안비용소계		32,072,840	1심 12,100,000 + 2심 11,550,000 + 3심 2,422,840(환송전) + 3심 6,000,000(환송후)
소송비용 확정신청	인지대	900	
	송달료	94,660	기발생 94,643 + 모바일단문메시지 17 (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)
신청비용소계		95,560	
합계		32,168,400	본안비용 32,072,840 + 신청비용 95,560

1) 1심 5,680,000,000 (= 40,000,000 × 142) / 2심 5,538,000,000 (= 39,000,000 × 142)

2) 파기환송 전후의 항소심은 별개의 심급으로 볼 수 없고, 파기환송 전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,
환송 전후의 항소심은 단일심급으로 보아 1회의 변호사보수만 인정한다(서울고등법원 2000. 12. 7.자 2000라352결정)



2. 피신청인1. 김남진(원고(선정당사자))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
 금 6,231,391원

$$= (12,100,000 + 11,550,000 + 2,422,840) \times 1/142^{5)} + 6,000,000^{6)} + 95,560 \times 1/2^{7)}$$

3. 피신청인2. 박호영(원고(선정당사자))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
 금 231,391원

$$= (12,100,000 + 11,550,000 + 2,422,840) \times 1/142 + 95,560 \times 1/2$$

3) 인지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기록상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적은 쪽이 소송비용에 산입할 인지액임

4) 3심(환송후) 원고

순번	원고(선정자)
1	김남진(선정당사자)
2	박호영
3	정철인
4	장효정

5) 소송총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므로 1심, 2심(환송전, 후), 3심(환송전) 소송비용을 원고들 인원수(142)로 균분함

6) 상고(환송후) 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 김남진이 부담

7)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인원수(2)로 균분





정본입니다.

2019.06.20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보 전은진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